

보험연구원 정책토론회

금융플랫폼에 대한 정책대응방안

2022. 4. 22. | 최성일

World's Leading Think Tank



* 본 자료에서 제시된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KDI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CONTENTS



1. 검토 배경
2. 금융부문 디지털 혁신에 따른 효과와 플랫폼기업의 성장
3.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정책대응 현황
4. 한국의 금융플랫폼 현황과 정책 대응방안
5. 맺음말 – 한국의 금융플랫폼 정책대응 고려사항

1. 검토 배경

- 금융부문의 디지털혁신은 금융시장의 경제적 마찰(economic friction)을 완화하고 경쟁을 진작함으로써 금융의 다양성 및 효율성, 포용성을 개선
- 한편,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고객정보를 축적한 빅테크기업은 마찰요인 완화 효과, 규모/범위의 경제와 네트워크 효과를 바탕으로 금융시장에 진입하여 영향력을 크게 확대
 - 빅테크 플랫폼기업의 경제력 집중에 따른 반경쟁적 행태와 데이터 남용 등에 대한 우려 제기

금융부문의 플랫폼화 현황과 편익 및 우려사항을 살펴보고,
주요국의 정책대응 현황과 연구사례를 살펴본 후 정책대응방안을 검토

2. 금융부문 디지털 혁신에 따른 효과와 플랫폼기업의 성장

2-1. 금융회사의 경제적 마찰(economic friction)의 완화*

- 금융이론에 따르면 정보의 비대칭성 등 경제적 마찰요인에 대응하여 금융중개 (financial intermediation)가 발전
- 핀테크 및 빅테크에 의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금융회사의 존립 근거인 이러한 경제적 마찰(economic friction)을 완화하는 효과
 - 정보처리 및 저장 비용 하락은 정보비대칭에 의한 금융중개기능 필요성 완화
예)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 정보 활용 시 차입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용되었던 담보의 필요성 감소, 금융거래이력이 없는 차주에게도 원활히 신용 제공 가능
 - 극단적으로는 차주에 대한 정보비대칭성이 충분히 극복될 경우 금융중개(intermediation)의 필요성이 없어질 수 있음
예) P2P가 본질적으로는 금융중개 없이 투자자와 차입자를 직접 연결하는 사업모델임
 - 계약조건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자동화하여 보다 완벽한 금융시장 형성 가능

*Erik Feyen, Jon Frost, Leonardo Gambacorta, Harish, Natarajan and Matthew Saal July 2021 “Fintech and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financial services: implications for market structure and public policy.” BIS Papers No 117를 참조

2. 금융부문 디지털 혁신에 따른 효과와 플랫폼기업의 성장

2-1. 금융회사의 경제적 마찰(economic friction)의 완화(계속)

- 금융증개도 실물경제부문과 마찬가지로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 그리고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의 3가지 경제적 동인의 영향을 받으며, 그 결과 일반적으로 선발자(first mover) 이익 존재
- 금융부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효과
 - 규모의 경제와 관련 고정비용과 한계비용을 모두 낮추는 효과가 있어 새로운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측면(예: 오픈뱅킹과 핀테크)
 - 네트워크 효과는 승자독식(winner-takes-all) 독점적 시장문제 야기
 - 범위의 경제는 축적된 고객정보를 레버리지하는 비금융 플랫폼기업이 금융을 포괄하는 종합플랫폼기업으로 변신하게 되는 효과

틈새시장에는 새로운 핀테크회사의 진입이 활발하고,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집중화가 진행되어 바벨모양으로 양극화하는 현상

2. 금융부문 디지털 혁신에 따른 효과와 플랫폼기업의 성장

2-2. 금융플랫폼 사업모델의 성장

▪ 플랫폼(platform)의 정의

- 일정한 기술표준과 거래규칙을 부과하여 둘 또는 그 이상의 서로 다른 유형의 고객들이 한 장소에 모여 서로를 발견 및 가치를 교환하는 것을 원활하게 하는 중개자/중개매체
- 온라인 플랫폼은 인터넷 환경에 기반한 플랫폼을 의미*

* 윤민섭, 고인목, 빈기범, 2019.12, “금융상품 온라인 플랫폼 제도화 방향 연구”,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금융위원회 용역보고서

▪ 빅테크의 금융업 진입

- 먼저 플랫폼내의 판매 관련 지급결제서비스에서 시작되어 이후 담보와 신용이 부족해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판매자들에 대한 대출 등 자금중개로 영역을 확대*

* 이병운 2021, “빅테크의 자금중개 서비스 확대, 의미와 과제”, 금융연구원 금융포커스 30권0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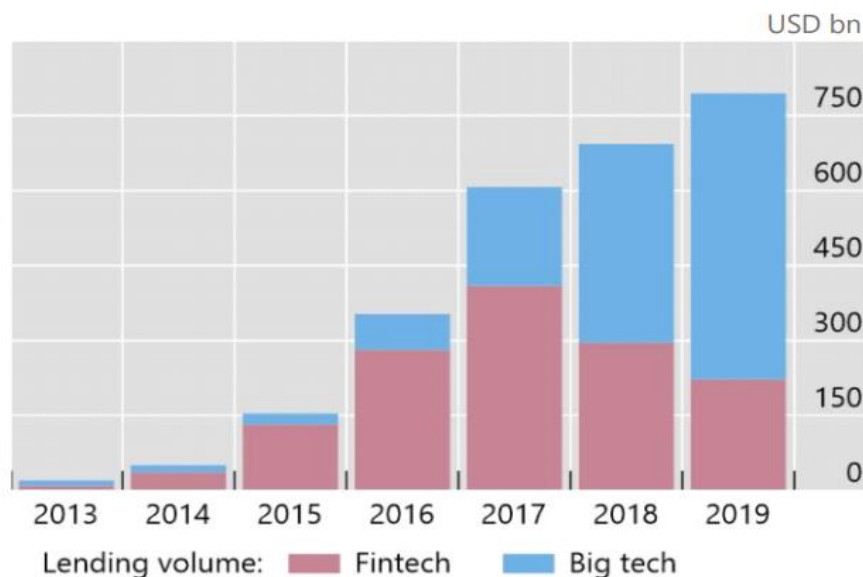
- 중국의 경우 2개 빅테크가 모바일 지급결제 시장의 94%를 차지
- 국제적으로 대출시장에 있어서도 핀테크와 빅테크 플랫폼에서 취급한 대출이 2013년부터 빠르게 성장, 2018년부터는 빅테크의 대출이 핀테크의 대출을 능가*

* Cornelli, G, J Frost, L Gambacorta, R Rau, R Wardrop and T Ziegler, 2020: “Fintech and big tech credit: a new database”, BIS Working Papers, no 8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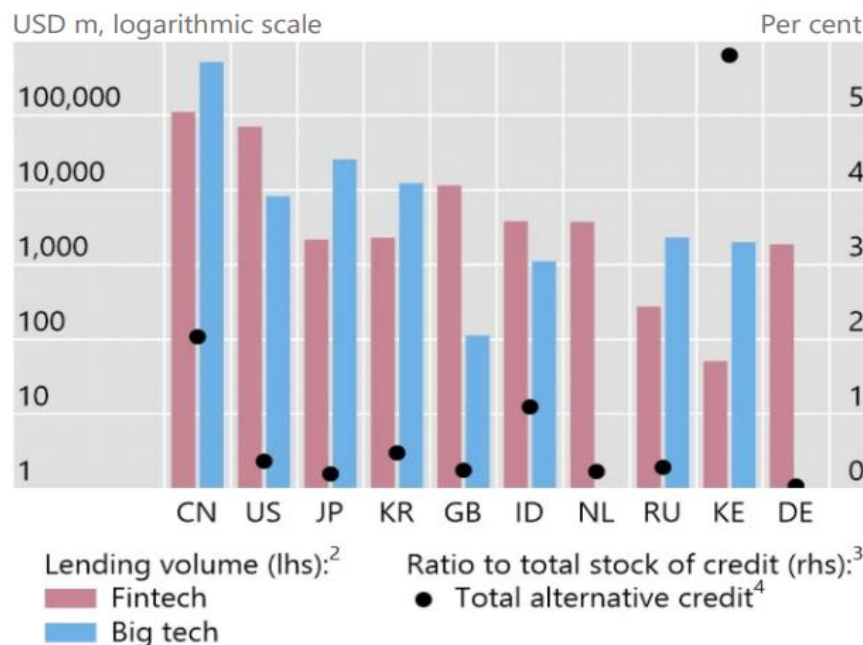
2. 금융부문 디지털 혁신에 따른 효과와 플랫폼기업의 성장

Global big tech credit is booming, overtaking fintech credit

Big tech credit is overtaking fintech credit¹



These alternative forms of lending are becoming a significant portion of total credit in a few economies



Figures include estimates. CN = China, US = United States, JP = Japan, KR = Korea, GB = United Kingdom, ID = Indonesia, NL = Netherlands, RU = Russia, KE = Kenya, DE = Germany.

¹ 2019 fintech lending volume figures are estimated on AU, CN, EU, GB, NZ and US. ² Data for 2019. ³ Domestic credit provided by the financial sector. Data for 2018. ⁴ Total alternative credit is defined as the sum of fintech and big tech credit. Data for 2019.

2. 금융부문 디지털 혁신에 따른 효과와 플랫폼기업의 성장

2-3. 금융플랫폼 사업모델의 특징과 장단점

■ 빅테크의 특징*

* 정선영 2022.1, “디지털경제와 시장독과점 간 관계”,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 **양면시장(two-sided market) 구조의 온라인플랫폼 사업모델 구현**
- **사용자의 이용이 늘수록 데이터 생산이 늘어나 네트워크 효과의 이점을 증대시키는 “데이터-네트워크-활동 순환(data-network-activities loop, DNA loop)” 작용으로 집중 심화***
*Agustin Carstens, Stijn Claessens, Fernando Restoy, Hyun Song Shin 2021.8, "Regulating big techs in finance" BIS Bulletin No45
-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낮은 가격 유지와 공격적인 대규모 투자를 지속**

■ 금융플랫폼화의 편익

- **금융포용성(financial inclusion) 증대 : 개도국* 및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개선효과****
* Financial Stability Board (FSB) 2020 “BigTech in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October. Didier, T, E Feyen, R Llovet Montanes and O P Ardic Alper 2021 “Global Patterns of Fintech Activity and Enabling Factors.” World Bank Group Fintech and the Future of Finance report. E Feyen et al (2021)에서 재인용
** Karen Croxson, Jon Frost, Leonardo Gambacorta and Tommaso Valetti 2022 “Platform-based business models and financial inclusion”, BIS Working Papers No 986
- **소비자의 선택권 제고 및 소비자 탐색비용 등의 감소. 특히, 플랫폼간 고객 확보 경쟁으로 비용 더욱 감소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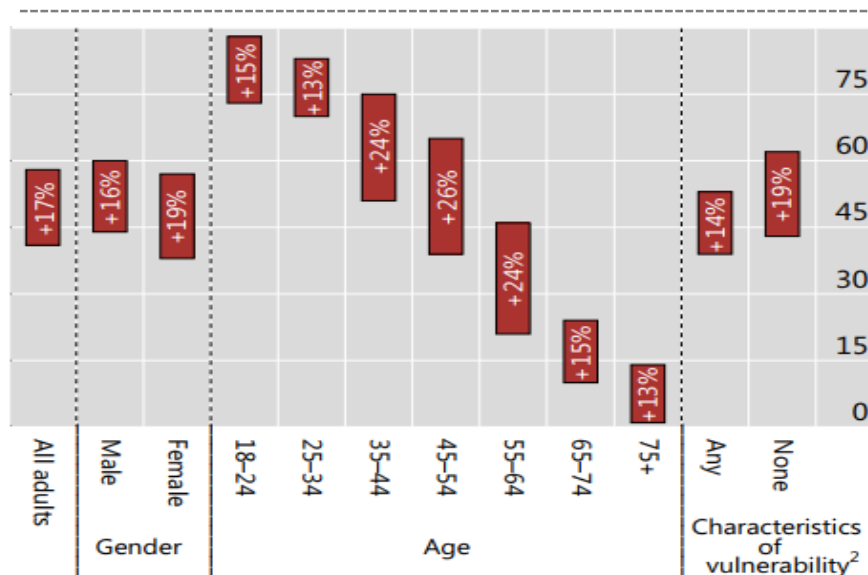
* 다만, 대표적인 양면시장 플랫폼인 신용카드를 비추어 볼 때 소비자에 대하여는 비용을 낮추고 혜택을 늘리는 경쟁이 예상되나, 플랫폼의 지배력이 확대되면서 금융상품 제조업자에 대하여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할 가능성 큼

- **복합금융서비스의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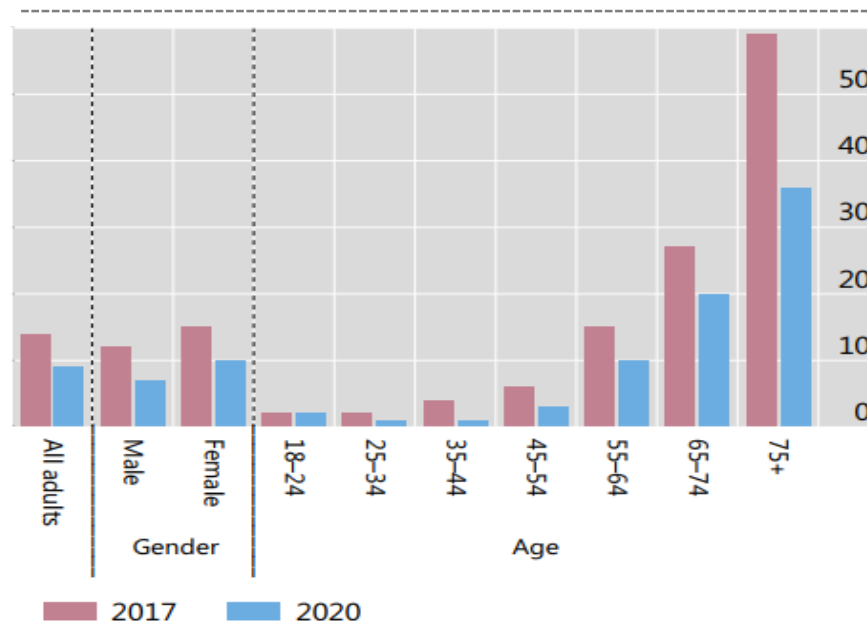
2. 금융부문 디지털 혁신에 따른 효과와 플랫폼기업의 성장

Use of mobile apps for banking in the UK is rising, as digital exclusion declines

Increase in share of adults who used a mobile app to undertake day-to-day banking activities¹



Share of adults who digitally excluded by age and gender (April 2017/Feb 2020)³



¹ Share of all UK adults who have undertaken day-to-day banking activities in the last 12 months (April 2017: 2,472 respondents / February 2020: 4,089 respondents), excluding 'don't know' responses (1%/0%). ² Derived through an algorithm processing the survey results, to identify whether respondents display at least one of the four drivers of vulnerability, namely health, life events, resilience and capability. For more details, see <https://www.fca.org.uk/publication/research/financial-lives-survey-2020.pdf>. ³ All UK adults (April 2017: 12,865 respondents / February 2020: 16,190 respondents).

Source: UK FCA Financial Lives Survey (FLS), April 2017 / February 2020.

2. 금융부문 디지털 혁신에 따른 효과와 플랫폼기업의 성장

2-3. 금융플랫폼 사업모델의 특징과 장단점 (계속)

■ 금융플랫폼의 문제점

➤ 승자독식의 자연독점적 성격

- DNA loop. 초기 단계에서는 극심한 경쟁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일단 긍정적 네트워크 효과를 얻게 되면 유인순환(attraction loop)을 통해 점차 자연독점의 형태로 발전
 - 이용자 확대에 따른 비용체감 및 이익체증 효과
 - 정보처리를 위한 대규모 투자로 자연독점적 경향 강화*
- *K. Croxson et al (2022)

➤ 개인정보 보호의 손상 우려

- DNA loop와 개인정보 소유구조(data governance)
 - 소비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빅테크가 정부나 금융회사에 비하여 낮은 신뢰*
- *A Carstens et al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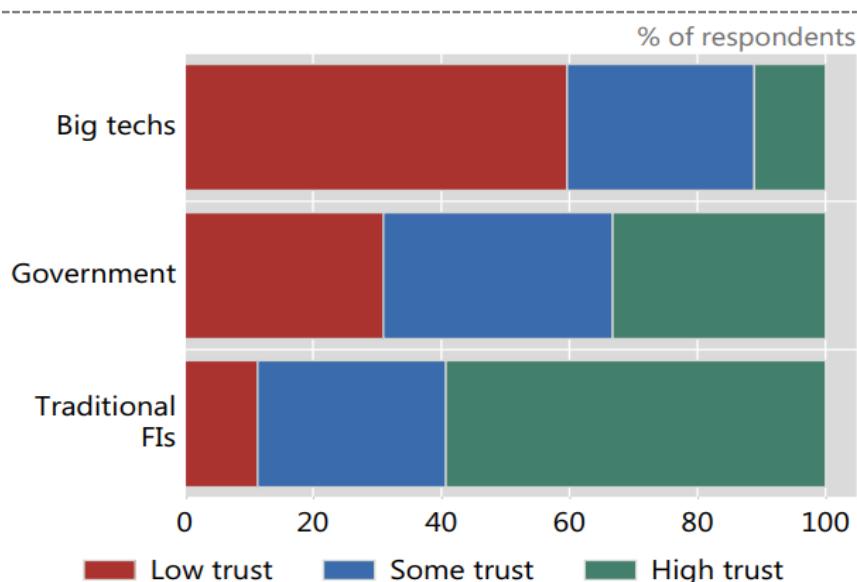
➤ 금융상품 판매에 따른 책임소재 불명확 우려

- 전통적인 금융감독 규제체계에서는 금융상품판매 위탁(대리)으로 간주,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등에 대하여 제조사가 궁극적인 책임 부담
 - 우월한 교섭력을 갖는 빅테크플랫폼의 금융상품 정보제공 미흡 등 문제 발생시 제조사에게 책임 묻기 어려움
예) 카카오페이의 플랫폼을 통한 P2P대출의 불완전판매*
- *윤민섭, 고인묵, 빈기범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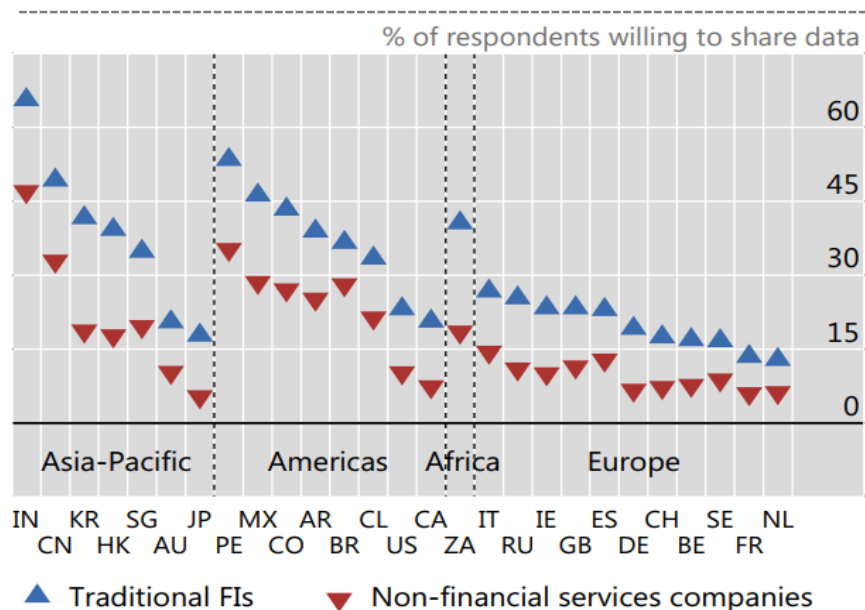
2. 금융부문 디지털 혁신에 따른 효과와 플랫폼기업의 성장

Consumers trust big techs the least to safeguard their data

US consumers' trust in counterparties to safeguard their data¹



Globally, consumers are generally more willing to share data with traditional financial intermediaries (FIs)²



AR = Argentina; AU = Australia; BE = Belgium; BR = Brazil; CA = Canada; CH = Switzerland; CL = Chile; CN = China; CO = Colombia; DE = Germany; ES = Spain; FR = France; GB = United Kingdom; HK = Hong Kong SAR; IE = Ireland; IN = India; IT = Italy; JP = Japan; KR = Korea; MX = Mexico; NL = Netherlands; PE = Peru; RU = Russia; SE = Sweden; SG = Singapore; US = United States; ZA = South Africa.

¹ Based on a representative sample of 1,361 US households, September 2020. The question reads "How much do you trust the following entities to safely store your personal data (that is, your bank transaction history, geolocation or social media data)? For each of them, please

3.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정책대응 현황

3-1. 플랫폼 리스크에 대한 평가

3-1-1. 플랫폼 독점화

▪ 빅테크플랫폼의 시장지배력 상승을 보는 상반된 견해 *

* 이하 2개 견해에 설명은 정선영(2022)의 <부록3> “빅테크의 시장집중 현상에 대한 견해”를 재구성

① 시장지배력 상승이 시장 효율화의 결과라는 견해

- 소수 선도기업의 점유율 상승은 시장경쟁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기업으로 자원이 배분되었기 때문. 이를 통해 소비자 후생은 증가
- 시장구조가 독점적이어도 소비자효용이 훼손되지 않는다면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음. 소비자 후생을 위해 규제를 최소화하는게 바람직
- 실증결과 시장지배력 상승과 함께 마크업이 늘어난 것이 가격인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 초기투자를 통해 한계비용을 낮춘 결과
- 빅테크의 혁신을 위촉시키는 반경쟁적 규제의 적용은 오히려 시장경쟁을 악화시켜 소비자 후생을 저하
- 선도기업에 대한 규제보다는 후발기업의 투자와 혁신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설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3.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정책대응 현황

3-1-1. 플랫폼 독점화(계속)

② 시장지배력 강화는 시장의 왜곡을 가져온다는 주장

- 시장집중화는 담합과 같은 반경쟁적 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을 높이므로 시장구조에 직접 규제를 가하는 구조적 해소책이 필요
- 현재의 시장집중화가 가격 측면에서 소비자후생을 높인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훼손
- 시장집중도 상승이 정태적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태적으로 경쟁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소수기업에 대한 시장집중도 상승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보다는 특허권 등을 통한 기술확산 억제, M&A 등 반경쟁적 행위로 이어짐
 - 예) Amazon, Apple 등 빅테크들이 최근에는 진입장벽을 구축해 신생기업을 위협하고 킬러인수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남용

3.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정책대응 현황

[참고] Lina Khan의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Amazon's Antitrust Paradox)*”

* Lina M. Kahn(2017), “Amazon's Antitrust Paradox,” 126 Yale L. J. 710.

- **상술한 전자의 입장을 시카고학파(Chicago school)의 가격이론이라고 하고, 후자의 입장을 경제구조주의(economic structuralism)이라고 봄**
- **경제구조주의 ***
 - **집중된 시장구조가 반경쟁적 행태를 가져온다고 보며 1960년대 미국의 반독점 사상과 정책이 기초**
 - * 경제구조주의는 일반적으로는 신 브랜다이스 움직임(Neo-Brandeis Movement) 이라고 불리운다. 이는 Tim Wu가 "The Curse of Bigness"(2018)라는 저서에서 Louis Brandeis 판사의 “독점이 팽배한 시대(Gilded Age)”를 인용하여 "New Gilded Age"라고 지칭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의 대척점은 Robert Bork판사가 “The Antitrust Paradox”(1978)에서 경제정책의 목표를 소비자 후생이라고 주장한 이래 이어온 경제정책 기조이다. KDI (이화령 외) 2021.11. “공정거래 정책의 중장기 발전에 관한 연구” 공정위 용역보고서 참조
- **시카고학파**
 - 반독점 문제를 보는 가장 적절한 도구는 가격이론. 산업구조는 단지 시장의 역동성을 반영한 결과
 - 반독점정책의 목표는 소비자후생을 극대화하는 것. 1982년 합병지침에 시카고학파 입장이 반영되어 반독점 정책이 시장구조 자체 보다는 소비자의 후생에 해를 미쳤음을 증빙하는 방식으로 변경

3.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정책대응 현황

[참고] Lina Khan의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Amazon's Antitrust Paradox)”

- Khan은 경제구조주의에서 시카고학파로의 변화가 반경쟁적인 형태에서 발생하는 피해 양상을 포착하는 데에 실패하고 실질적으로 경쟁을 촉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
 - 특히 온라인플랫폼과 데이터 중심 시장에서 문제가 증폭
- 경쟁 과정의 중립성과 시장 구조의 개방성에 중점을 둔 독점금지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
 - 소비자 후생중심의 접근법은, 기업이 공급업체와 생산자를 압박하여 시스템 안정성에 위협을 가하거나 미디어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것과 같은 과도한 집중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들을 무시하는 문제

3.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정책대응 현황

3-1-1. 플랫폼 독점화(계속)

→ 최근에 부각된 2가지의 빅테크플랫폼 독점 규제 필요성

① 직접적인 소비자 후생보다는 사회적 후생 고려

- Kahn의 주장처럼 직접적인 소비자후생 보다는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 심화로 초래되는 사회적 후생감소를 기준으로 시장지배력 남용 여부를 판단할 필요*
*정선영 (2022)
- 빅테크 플랫폼의 약탈적인 저가 전략은 직접적으로는 소비자의 후생이 증대되지만, 플랫폼 근로자의 열악한 고용환경, 후발 · 신규사업자 들의 피해, 그리고 경제구조의 양극화 심화의 문제점을 내포

② 사전적 규제의 필요성

- 빅테크 플랫폼이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기 때문에 기존 반독점 규율체계에서의 시장획정 (market definition), 독점력 및 경쟁제한성 판단 등에 어려움*
* 이순호 (2021), “온라인 플랫폼 및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강화정책의 해외 동향 및 국내규제감독에 대한 시사점,” 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 제30권 20호
 - 전통적으로 경쟁당국이 중시하는 단일시장, 기업규모, 가격책정 및 집중도 등의 잣대는 더 이상 유효 X
 - 이익보다는 성장을, 수입 보다는 데이터를 추구하는 빅테크플랫폼은 가격책정과 소비자후생에 초점을 맞추는 기존의 경쟁당국 접근방법에 부합하지 않음
- “too small to care” → “too large to ignore” → “too big to fail” 로 변화하는데 몇 년이 걸리지 않는 빠른 속도. 사후 교정방식은 오랜 시일이 소요되어 부적합*
* E Feyen et al (2021).

3.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정책대응 현황

3-1-2. 빅테크 플랫폼과 금융안정

- **행위기반(activity-based)과 기관중심(entity-based) 규제**

- (행위기반 규제)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에 부합.

금융소비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등 영업행위 규제에 적합

- (기관중심 규제) 금융안정성 추구 등 일정한 정책목표에 기반하여 특정 면허를 가진 기관을 전제하여 부과하는 규제

- ✓ 경제나 금융시스템에 충분히 커다란 잠재적 영향을 가지고, 그룹차원의 결합재무제표 및 위험통제에 대하여 감독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기관중심 감독이 요구됨*

* F. Restoy (2021): "Fintech regulation: how to achieve a level playing field", FSI Occasional Papers, no 17, February.

- 연결기준에 의하여 기관중심 규제를 받고 있는 은행과 달리 빅테크 플랫폼은 행위기반 규제만을 일부 받고 있어 은행과 빅테크가 동등경쟁여건(level-playing field)이 아니라는 주장

3.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정책대응 현황

3-1-2. 빅테크 플랫폼과 금융안정 계속)

■ 빅테크 플랫폼의 금융안정 리스크*

* 이보미 (2020), “빅테크의 금융서비스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금융연구원, KIF VIP 리포트 2020-17. 리스크 현황만 참조.

- **(비은행 금융중개 리스크)** 자금조달운용상 불일치로 인한 유동성리스크 및 쏠림현상 등
 - 리스크전환 기능이 제약되거나, 자금중개 기능에 대한 별도의 라이선스와 건전성규제가 적용될 경우 금융안정 리스크는 크지 않을 수 있음
 - **(운영리스크)** 시스템 운영 오류 등 금융보안 위협 점증
 - 금융산업의 특정 금융플랫폼 집중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전이위험)** 플랫폼 모기업의 신용위험 등 고유위험의 전이
 - 시장집중 정도와 자금중개기능에 대한 별도 건전성규제 적용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시장지배력 집중 리스크)** 금융선별기능의 약화와 경쟁 금융회사의 위험 추구
 - 반독점 규제에 있어 대상플랫폼을 사전에 지정 별도 규제하는 기관중심 접근 필요성 제기
- ⇒ 금융플랫폼의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리스크는 일률적으로 기관중심의 건전성 규제를 정당화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각 국가별로 비은행 자금중개 기능에 대한 별도의 라이선스와 건전성 규제체계가 정비되어 있는지 여부와 특정 금융플랫폼의 금융산업에서의 중요도 및 시장지배력 정도에 따라 다름

3.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정책대응 현황

3-2.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주요국 규제현황*

* J. C. Crisanto, J. Ehrentraud, A. Lawson, F. Restoy (2021) “Big tech regulation: what is going on?” FSI Insights on policy implementation No 36의 내용을 주로 참조하여 작성. 단, “3-2-4. 일본의 금융플랫폼 제도화” 는 별도 자료를 참조함.

3-2-1.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동향 개요

(1안) 기존 규제 보완을 통해 빅테크의 운영을 간접 규율

- 빅테크에 대하여 특정 업체기반(entity-based)의 규제를 도입하지는 않고, 행위기반(activity-based)으로 접근
- 개인정보 보호, 정보공유를 강조하고, 기술의존도가 높거나 제3자 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운영상의 복원성(resilience) 등의 개선에 치중

(2안) 기관중심의 의무사항과 제한을 사전적으로 직접 규율

- 빅테크 플랫폼 모델에서 나타나는 네트워크 효과와 데이터의 피드백 효과의 상호작용(DNA loop)에서 비롯되는 리스크를 통제
-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남용 및 데이터 지배 방지를 위한 규제와, 시스템 안정성과 복원성 제고를 위한 규제 등에 나타남

3.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정책대응 현황

3-2-1.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동향 개요(계속)

각국의 규제는 각국의 경제 및 금융환경 특성에 따라 다르게 발전



중국

- 빅테크가 지급결제 등 금융서비스의 지배적인 공급자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금융안정성의 확보가 빅테크 규제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



미국

- 전통적으로 금융과 산업간의 분리정책이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빅테크 규제와 관련하여 금융안정성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지는 않았으며, 시장의 경합성(contestability of market)의 보전에 더 치중



유럽

- 빅테크의 대규모 시장으로서 빅테크 관련 리스크를 통제하면서 소비자와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정책에 치중



일본

- 빅테크 플랫폼의 문제점을 규율하기 보다는 플랫폼경제의 잇점을 살리기 위하여 금융의 제조 판매를 분리하여 플랫폼화를 적극 추진. 다만, 아직까지 금융플랫폼업체로 빅테크가 진입하지는 않음

3.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정책대응 현황

3-2.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주요국 규제현황(계속)

3-2-2. 경쟁정책 관련 규제(Competition and market contestability)

최근까지 각국은 빅테크의 반경쟁적 행태에 대하여 전통적 규제방식을 적용

- 빅테크 관련 역량을 확충하고 경쟁상 조치의 강도를 높이는 한편, 증거의 부담을 낮추는 조치를 취하는 보완적인 접근 채택

그러나, 전통적인 사후규제 방식이 효과적이지 않으며, 빅테크의 시장침투 및 시장교란의 속도가 빨라서 시장 경합성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국가별로 사전적 규제방식이 도입되기 시작

- 온라인플랫폼의 제3자 호환성(interoperability)의 보장, 기업이용자의 플랫폼외부 고객과의 거래제한 금지, 플랫폼 기업이용자의 동등 취급 의무 등을 규제

3.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정책대응 현황

3-2-2. 경쟁정책 관련 규제 (계속) - 미국

- 그동안 자국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에서 미온적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2021.6월 하원에서 거대플랫폼 대상 5개 법률안의 반독점법안 패키지**가 발의되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 이순호 (2021)

** “미국 온라인 시장 선택과 혁신 법률(American Choice and Innovation Online Act)” ; “플랫폼 독점 종식 법률(Ending Platform Monopolies Act)” ; “서비스 전환 활성화를 통한 경쟁과 호환성 증진 법률(Augmenting Compatibility and Competition by Enabling Service Switching Act 또는 ACCESS Act)” ; “플랫폼 경쟁과 기회 법률(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 “기업 인수합병 신청비용 현대화 법률(Merger Filing Fee Modernization Act)” 의 5개 법률

- 핵심규제내용은 지정플랫폼(Covered Platform) 제도임.

- 시장획정 등의 전통적인 절차가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규제대상이 되는 지정플랫폼을 사전에 정하여 준수사항을 규율했다는 점에서 사전적(ex-ante) 규제임
- 지정플랫폼은 FTC와 법무부가 규모와 거래 중요성을 기준으로 지정*

* (i) 미국 내 월간 활성 사용자 수(Monthly Active Users)가 5천만명 이상 또는 월간 활성이용업체 수가 10만개 이상이고, (ii) 연간 순매출 또는 시가총액이 6천억달러(약 7백조원) 이상이며,

(iii) 핵심 거래 파트너(critical trading partner)인 온라인 플랫폼이 그 대상이다. 이때 핵심 거래 파트너란 경쟁법상 필수설비(essential facility) 또는 문지기(gatekeeper)와 상통하는 개념으로, 플랫폼 이용업체가 고객들에게 접근하여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실상 제한(즉, 시장진입을 통제)할 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양용현, 이화령 (2021), “미국의 플랫폼 반독점법안 도입과 시사점” KDI Focus 제109호 참조

3.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정책대응 현황

3-2-2. 경쟁정책 관련 규제 (계속) - EU

- **European Commission은 2016년부터 시작한 온라인플랫폼 시장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20.12월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s, DSA)과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 DMA) 초안을 공개**
- **DMA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을 "게이트키퍼(gatekeepers)" 로 지정하고 불공정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의무사항과 금지사항을 규정**
- **기존 EU 경쟁법에 의한 사후 교정조치를 제한하지 않으면서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행위에 따른 구조적 부정적 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규제임**

3.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정책대응 현황

3-2-2. 경쟁정책 관련 규제 (계속) - 중국

- 중국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2021년 2월 “플랫폼 반독점에 대한 가이드라인(Platform antimonopoly guidelines)” 발표, 빅테크기업에 대한 반독점 요구사항 규정
- 중국인민은행(PBC)도 비은행 지급결제서비스업자에 대하여 경쟁 친화적 요구사항이 포함된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

3.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정책대응 현황

Key big tech competition guidelines and proposed legislation in selected jurisdictions

Jurisdiction	Regulation	Scope	Ex ante or ex post?		BOP	Instrument		
			EX A	EX P		INT	TPP	PRO
China	Platform Antimonopoly Guidelines	All online platforms. Additional provisions for "essential facilities", as well as provisions to identify potential abuses by dominant platforms.	✓	✓		✓	✓	✓
China	Regulation on non-bank payment service providers*	Non-bank institutions that provide payment services for natural persons, legal persons and other organisations.	✓	✓		***	***	***
EU	Digital Markets Act*	"Gatekeepers" with a strong, entrenched, and durable economic and intermediation position.	✓	✓**		✓	✓	✓
US	Competition and Antitrust Law Enforcement Act* (CALERA)	"Dominant" firms that have >50% of total market share or "significant" market power.	✓	✓	✓			
US	Augmenting Compatibility and Competition by Enabling Service Switching Act* (ACCESS Act)	Platforms that satisfy criteria for (i) monthly active users (individual or business); (ii) market capitalisation; and (iii) critical trading partner status.	✓	✓**		✓		
US	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Identical scope as the ACCESS Act.	✓		✓			
US	American Choice and Innovation Online Act*	Identical scope as the ACCESS Act.	✓	✓**		✓	✓	✓
US	Trust Busting in the 21st Century Act*	Dominant platforms, determined by evaluating the (i) extent and durability of market power; (ii) government involvement (contracts etc), (iii) exclusivity agreements; (iv) network effects; and (v) vertical integration.	✓	✓**	✓		✓	
US	Bust up Big Tech Act*	Platforms that satisfy criteria for (i) yearly active users; and (ii) total revenue.	✓		✓		✓	

* Proposed.

** Ex post measures (eg fines) are specific to big techs.

*** If a non-bank payment institution meets certain conditions in terms of market share, the PBC may provide an early warning of measures it may take. Apart from regulatory interviews, these may include a range of measures to restore fair competition and a healthy development of the payment service market. The PBC can also advise the State Council's anti-monopoly law enforcement agencies to take measures against abuse of market dominance by requiring a breakup of the institution by separating different types of payment business.

BOP = shifting of the burden of proof from the regulator to the firm engaging in a merger or acquisition; INT = interoperability with third parties; PRO = allowing business users to promote and offer products and services and conclude contracts outside the platform; TPP = equal treatment of own and third-party products or services.

Source: Authors' compilation.

3.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정책대응 현황

3-2.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주요국 규제현황 (계속)

3-2-3. 금융안정성 확보(중국)

01 중국의 지급결제시장에서 대종을 차지하는 빅테크의 리스크전환 금융기능 사실상 금지

- 2019.1월 빅테크의 고객계좌 잔고에 대하여 100% 지급준비금을 중국인민은행 예치 의무화
- 2021.1월 비은행지급결제회사의 예금 및 고객 이체자금의 이용에 관한 새로운 규제 발표. 플랫폼의 지급결제와 관련된 자금을 중국인민은행의 지정은행계좌로 예치토록 요구

02 은보감회(CBIRC)의 은행 대출의 플랫폼의존도 제한

- 은행 연계 온라인렌딩에 대하여 플랫폼 등이 30% 이상 자금 총당 의무
- 단일 플랫폼을 통한 대출은 은행의 기본자본의 25%로 제한
- 온라인파트너 제휴 대출총액이 은행 전체 대출의 50% 초과 금지

03 금융지주회사(FHC)제도 적용으로 빅테크의 금융안정 리스크에 직접 대응

- 2020.10월 중국인민은행 ‘금융지주회사(FHC)에 대한 잠정규제안’ 발표. 금융영향력이 큰 비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로 기관단위(entity-based) 규제
- 기업지배구조, 기업조직, 주주자격, 관계자금용 및 자본적정성 규제 적용. 비금융업무취급이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빅테크 금산분리 의무화
- CITIC Group과 China Everbright Group은 이미 중국인민은행에 금융지주회사 설립인가를 신청. Tencent와 Ant Group도 설립인가를 추진중

3.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정책대응 현황

3-2-3. 금융안정성 확보(계속) (EU 및 미국)

- 빅테크의 금융안정성을 직접 규제하기 위한 조치는 아직 없음. 중국과 달리 빅테크가 금융서비스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작기 때문
- 다만, EU 및 미국에서도 플랫폼과 금융의 결합에 따른 감독상의 이슈에 대한 연구조사 및 대응 요구 점증

3.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정책대응 현황

3-2.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주요국 규제현황(계속)

3-2-4. 일본의 금융플랫폼 제도화*

*보험연구원(2022), “일본의 금융서비스중개업제도 검토”를 기초로 작성

- 2020.6월 기존 “금융상품판매법”을 “금융서비스제공에 관한 법률”로 개정
 - 새로이 도입된 금융서비스중개업은 은행, 증권, 보험 등 업권별로 나뉘어있는 중개업등록을 단일 사업면허로 허용, 소비자에게 일괄 서비스제공 가능
 - 기존 제도하에서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개별업권의 사업면허 취득’과 ‘소속제의 적용을 받음
 - 금융서비스중개업 제도하에서는 복수의 등록없이 복수업권의 상품서비스 중개 가능, 소속제* 비 적용
- * 소속처 금융기관은 중개업자의 업무운영지도의 의무를 지고, 중개업체가 고객에 가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지는 제도를 말한다. 보험연구원(2022). 이는 대리판매 또는 금융회사 아웃소싱에 대한 전통적인 국제감독규범으로 우리나라의 대출모집인 등의 일사전속주의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중개업자가 대형화하여 소속처 금융기관보다 협상능력이 클 경우 등에는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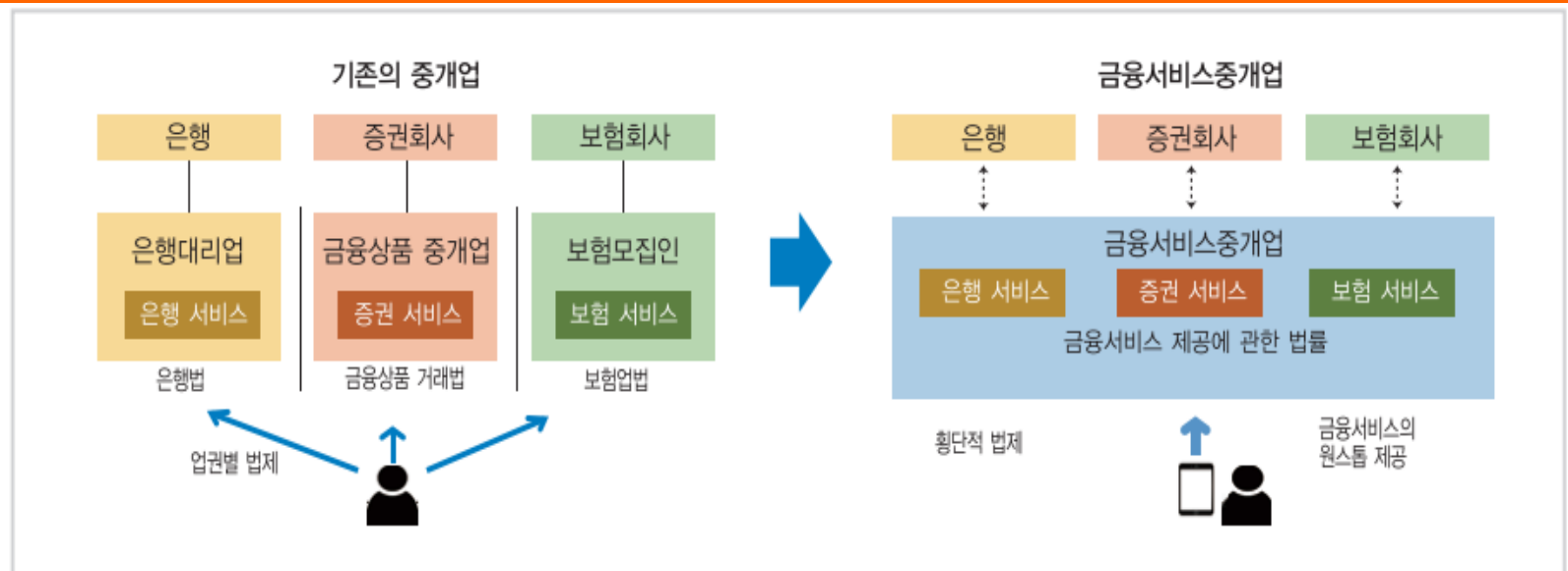
(소속제 비적용에 따른 소비자보호 규제)

- ① 고도의 전문적 설명을 필요로 하는 상품·서비스의 취급 제한
- ② 소비자 피해 발생시 직접적인 손해배상책임 부담. 이의 이행을 위해 보증금 공탁의무 부과
- ③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정보제공 의무, 고객정보보호 의무, 고객자산예탁 금지의 영업행위 규제

3.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정책대응 현황

3-2-4. 일본의 금융플랫폼 제도화(계속)

금융서비스중개업 개요도



출처: 금융연구원 (2020) “일본 핀테크 관련법 개정의 주요내용”, 금융브리피스 29권 16호

3.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정책대응 현황

3-2-4. 일본의 금융플랫폼 제도화(계속)

- **일본의 금융서비스중개업제도의 기대 효과**

- 금융플랫폼을 제도화하여 향후 금융상품의 제조와 판매의 분리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
- 다만, 빅테크플랫폼화에 따른 시장구조적 문제 및 불공정경쟁 등 고려 없음

- **다만, 2021.11월까지 일본의 금융서비스중개업자로 등록하거나 등록을 검토중인 회사는 핀테크 기업 및 금융회사에 한정***

* 2021.11월 현재 등록된 사업자는 핀테크기업인 ‘40F’와 금융투자회사인 ‘SBI 네오모바일 증권’ 두 개사이다. 이중 SBI 네오모바일 증권은 고객에게 그룹사의 자전거보험과 애완동물보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라이프넷생명보험 산하 전업보험대리점인 「라이프넷 Mirai」의 경우 2022년중 사업자등록을 검토 중에 있다.(보험연구원(2022)).

- **일본의 빅테크의 플랫폼화 진전이 늦어서인지, 금융당국이 빅테크의 금융플랫폼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어서인지는 추가 조사 필요**

3.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정책대응 현황

3-2.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주요국 규제현황(계속)

3-2-4. 정보보호 등 기타 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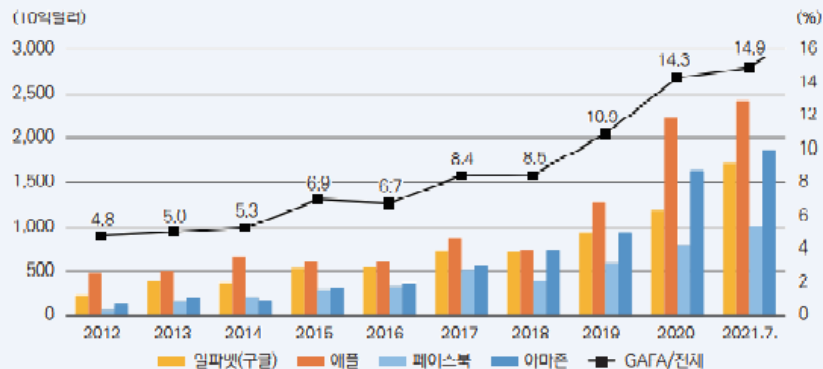
- 빅테크가 개인정보 기반의 DNA-loop 방식으로 급격하게 성장하는 점과 관련 미국과 EU, 중국은 정보보호와 정보공유를 강조하는 여러가지 조치방안 발표
 - 특히, 중국, EU는 이용자의 정보이동성(users' data portability)에 대한 방안 제시. 이는 향후 정보공유와 금융서비스 관련 개인정보의 일반적 기준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
- 금융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제3자로서 위탁처리하는 빅테크의 운영상 복원성(operational resilience)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제시
- EU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제안하여 초대형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광범위한 영업행위 규제 제시

4. 한국의 금융플랫폼 현황과 정책 대응방안

4-1. 한국의 금융플랫폼 현황

-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미국 GAFA의 시가총액은 지난 10년간 5(Apple) ~ 16배(Amazon) 상승
- 한국의 경우에도 2019년 이후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대표 플랫폼인 카카오와 네이버로의 경제력 집중이 급증. 다만, 적어도 현재로서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지위가 GAFA와 비견될 만큼 공고하다고 보기는 힘들(양용현.이화령,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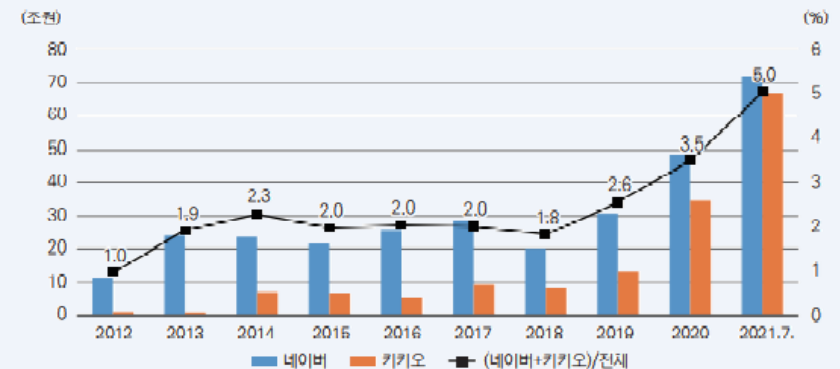
[그림 1] GAFA 시가총액과 비중의 변화: 2012~2021. 7.



주: 1) 막대그래프는 각 플랫폼 기업의 시가총액임(최측).
 2) 선그래프는 미국 전체 상장기업 대비 GAFA 시가총액 합액 비율임(우측).
 3) 2021년 7월(16일)을 제이하면 연말 기준 값임.

자료: Bloomberg.

[그림 2] 네이버, 카카오 시가총액과 비중의 변화: 2012~2021. 7.



주: 1) 막대그래프는 각 플랫폼 기업의 시가총액임(최측).
 2) 선그래프는 국내 전체 상장기업 대비 네이버, 카카오 시가총액 합액 비율임(우측).
 3) 2021년 7월(20일)을 제이하면 연말 기준 값임.

자료: 한국거래소 데이터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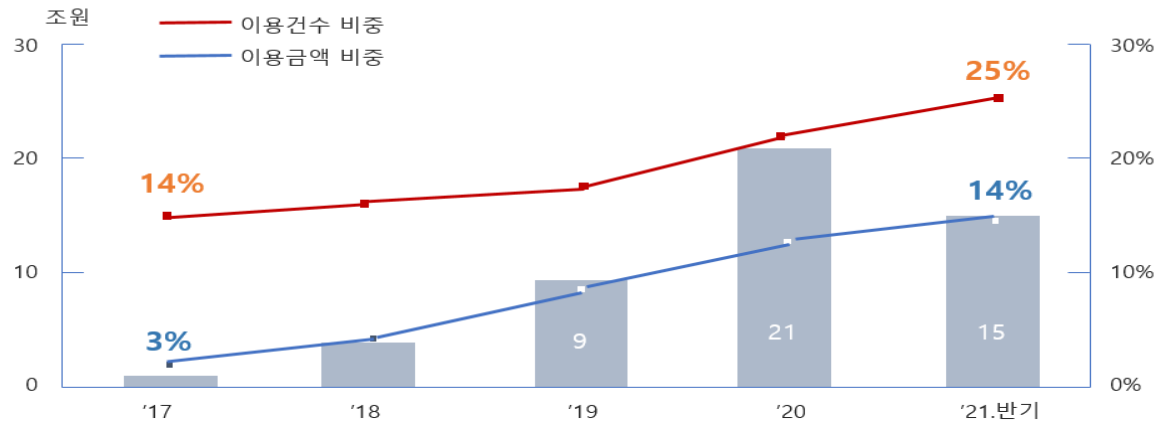
4. 한국의 금융플랫폼 현황과 정책 대응방안

4-1. 한국의 금융플랫폼 현황(계속)

- 중국과 같이 빅테크가 소비자금융시장 플랫폼을 장악한 상태는 아니지만 간편지급결제를 시작으로 점차 대출 및 보험, 자산운용시장 등으로 빠르게 확대

간편지급결제

전체 간편결제 이용 실적 중 선불충전 비중 추이



주)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충전 방식 간편결제 이용 실적 기준

* 출처: 한국은행

- 오프라인 상거래 결제로까지 영역 확대 가능성
-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동일기능 동일규제 논란

4. 한국의 금융플랫폼 현황과 정책 대응방안

4-1. 한국의 금융플랫폼 현황(계속)

대출

- 빅테크인 카카오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를 설립하였고, 네이버도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이 우리은행과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 대출서비스 개시
- 금융플랫폼이 빠르게 시장을 잠식. 사전적 규제 필요성의 중요한 근거 충족

〈그림 19〉 플랫폼 연계대출 신규 취급액 추이



* 플랫폼 연계대출 정의: 신용대출 개설 이전 30일 내
대출비교 플랫폼 조회 이력이 있는 경우
자료: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그림 20〉 업권별 플랫폼 연계대출 비중 추이



자료: 코리아크레딧뷰로(KCB)

4. 한국의 금융플랫폼 현황과 정책 대응방안

4-2. 한국의 금융플랫폼에 대한 규제방안

4-2-1. 반독점규제*

*양용현, 이화령 (2021)을 참조하여 작성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6월 “플랫폼 불공정 근절정책”을 발표**
 -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플랫폼-입점업체간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하여 플랫폼의 소비자보호 책임을 확대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별도의 심사지침 마련에 중점, 점진적 접근**
 - 규제대상이 되는 온라인플랫폼을 폭넓게 정의하고, 검색의 공정성·투명성 증대 의무를 부과하여 간접적으로 경쟁중립성 지향을 요구. 대체로 소비자보호 등 관련 법률의무와 유사한 수준
 - 미국은 빅테크 플랫폼만을 지정플랫폼(covered platform)으로 사전에 지정하여 반독점법안의 핵심인 이해상충의 회피 등을 엄격하게 요구
- **(평가)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에 머뭇. 소수의 대형플랫폼만을 규제대상으로 지정하여 사전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미흡**
 - 다만, 네이버와 카카오가 미국의 GAFA에 비견될 만큼 공고하지 않고, 2010년 카카오톡 출시를 시작으로 시장에 진입한 카카오가 10여년만에 네이버와 비견되는 규모로 성장한 것은 오히려 경제의 역동성을 보여준 측면

4. 한국의 금융플랫폼 현황과 정책 대응방안

4-2-2. 금융소비자보호법*

*이성복, 2022,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방향과 과제”, 2022년 KDI 금융포럼 발표자료를 참조하여 작성

- **정부는 2020.3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금소법)을 제정, 2021.3월 시행**
 - 동일행위-동일규제의 원칙하에 금융업권별 금융상품판매 · 자문규제를 금소법으로 통합함으로써 감독체계 일원화
- **온라인 금융플랫폼 규제 관련 문제**
 - ①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에 대한 이해상충규제와 불공정행위 규제에 공백이 존재
 - 이해상충 규제는 행위규제가 아닌 대출성 금융상품 관련 등록규제에 편입
 - 불공정행위 규제도 포저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사전 방지 한계
 - ② 비대면채널의 금융상품 광고행위, 정보제공, 권유 · 중개행위 구별이 곤란하다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률상 명확히 하지 않음
 - 권유 · 중개행위는 판매 · 중개업자로 등록을 한 자에 한하여 취급이 가능하고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규제가 적용
 - 광고행위로 판단되면 광고규제만을 적용
 - 단순히 금융상품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규제 적용 없음

4. 한국의 금융플랫폼 현황과 정책 대응방안

4-2-2. 금융소비자보호법 (계속)

- **2021.9월 금융위는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의 목적이 정보제공 자체가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중개로 볼 수 있다고 법률 해석***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1.9.7.)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사례를 전파했습니다”

- 온라인플랫폼의 금융상품관련 서비스 상당부분이 미등록 중개행위에 해당하게 되고 시정을 요구받음

- **(평가) 플랫폼의 이해상충행위와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고, 대형 금융플랫폼에 대한 차별화된 사전적 규율체계 마련 미흡**

- 모든 플랫폼에 대하여 금융상품 중개를 폭넓게 해석하여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당초 불공정거래와 불완전판매의 우려가 컸던 빅테크 뿐만 아니라 혁신을 지향하는 다수의 핀테크의 비대면 업무도 크게 제약을 받는 상황

4. 한국의 금융플랫폼 현황과 정책 대응방안

4-2-3. 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

*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 2021.11.4)” 를 기초로 작성

- 2021.7월 금융위원회는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을 발표, 이 중에는 금융플랫폼의 이용자 보호체계 도입 추진이 포함됨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플랫폼**” 은 온라인 플랫폼으로서 금소법상 규율대상이 되는 판매, 중개 및 광고 뿐 아니라 그외에 비교분석 및 단순 정보제공도 포괄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규정*

* “이용자 또는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로 이루어진 둘 이상의 집단 사이에 상호작용을 목적으로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①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이하 금융회사등)와 이용자 사이에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대리, 중개나 주선을 하거나, ②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로부터 요청을 받아 이용자에게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홍보나 정보제공 등을 하거나, ③이용자에게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비교분석, 추천 등을 하거나 위 또는 ④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스마트·모바일 기기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상의 공간에 개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 으로 정의됨

4. 한국의 금융플랫폼 현황과 정책 대응방안

4-2-3. 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 (계속)

금융플랫폼에는 적용되는 주요 규제방안

01 금융플랫폼 거래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용자의 배상책임(민법 제756조)” 의무 적용 (개정안 제27조의2제2호)

- 일본 금융서비스중개제도의 소속제 배제와는 달리 금융플랫폼과 연계한 금융회사가 “사용자의 배상책임” 부담
- 우월적 지위에 있는 빅테크플랫폼과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적용하는 문제

02 금융플랫폼업자에 대한 행위 규제 도입(제36조의3제3항 및 제4항)

- 금융플랫폼 운영자가 제공하는 금융상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다른 금융회사 등에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추가로 금지
- 다만, 비금융회사 금융플랫폼에 대하여는 금융회사 등이 동 금지사항을 준수케 하도록 간접 규율

4. 한국의 금융플랫폼 현황과 정책 대응방안

4-2-3. 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 (계속)

금융플랫폼에는 적용되는 주요 규제방안(계속)

03 금융플랫폼업자에 대한 과징금제도 도입

- 상기 규제 위반시 금융회사 금융플랫폼업자(제46조제2항) 뿐만 아니라 비금융회사 금융플랫폼(제46조의2제1항 제2호) 모두 위반행위 관련 수입의 50%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 적극적인 행위 규제 강제.

- **(평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금융플랫폼을 폭넓게 정의하지만, 별도의 “업” 으로 규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직접 규율하는 데에는 한계 소지**

- 금융플랫폼으로 하여금 거래 금융회사 등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을 금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금융회사 등으로 하여금 비금융회사 금융플랫폼에 우월적 지위 남용을 금지하도록 간접 규율하는 것은 무리
- 행위규제의 직접적인 의무대상이 아닌(간접규율대상) 비금융회사 금융플랫폼에 과징금을 부과 가능한지 실효성 논란 소지
-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한 규정*도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는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사전적 규제로는 미흡

*①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용할 의사가 없는 용역을 제공받도록 하는 행위, ②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자기를 위하여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③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금융플랫폼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전가하는 행위, ④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

4. 한국의 금융플랫폼 현황과 정책 대응방안

4-2-4. 금융복합기업집단 규제*

* 강경훈, 양기진 (2022), “금융업 진출 빅테크에 대한 기관중심 감독방안에 대한 연구”, 2022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금융학회 발표자료 (2022.2.11.)를 기반으로 작성

- **2022.2월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금융학회 분과에서 금융업 진출 빅테크에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여 기관중심으로 감독하는 방안 발표**
- **기관중심 규제 도입 사례**
 - (중국) 빅테크플랫폼 업체에 새로이 적용되는 금융지주회사(FHC)제도
 - (한국) 2020.12월 제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 **다만,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 주요 이업종에 동시에 금융업을 인가받아 영위하고 있어야 하는 요건이 있어 현재 우리나라의 빅테크플랫폼을 포괄하지 않음**
 - 이에 금융복합기업집단 대상을 “사실상 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넓히고, 건전성관리 중심 규율에 행위규제를 추가하는 개선방안 제시

4. 한국의 금융플랫폼 현황과 정책 대응방안

4-2-4. 금융복합기업집단 규제 (계속)

- **(평가) 금융복합기업집단이라는 기존 규제체계 범위를 확대하여 빅테크플랫폼을 기관중심으로 건전성 규제와 사전적 행위 규제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안정 리스크에도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
 - 그러나 우리나라의 빅테크플랫폼 문제의 본질은 기업집단이 사실상 금융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DNA-loop를 통한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행태임
 - 한국의 금융플랫폼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시장지배력에 따른 공정경쟁 관련 사전규제의 정비 필요성은 인정되나, 중국과는 달리 아직까지 금융플랫폼이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시스템리스크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그룹내 회사간 위험의 전이, 집중 등 그룹리스크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주된 관심사항으로 보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으로 규율하는 데에는 부적합

5. 맺음말 – 한국의 금융플랫폼 정책대응 고려사항

01

금융플랫폼은 최소한 경쟁초기에는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므로 그 장점을 살리는 방안 강구 필요

- 일본은 금융서비스중개업자 제도를 도입하여 금융플랫폼 제도화를 추진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빅테크가 시장지배력을 갖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플랫폼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
- 현재 금소법에서 규정하고 판매중개 관련 규제를 온라인플랫폼과 관련하여 별도로 다시 규율
 - 현재 획일적으로 해석 운영되고 중개에 해당하는 비대면거래의 범위를 시장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플랫폼업체에 한정하여 적용
- 금융플랫폼업체의 판매중개행위에 대한 책임소재를 보다 명확히 하여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거나, 금융회사 또는 플랫폼업체 상호간에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함
 - (방안) 판매사 책임(일본), 빅테크플랫폼에 한해 판매사 책임, 제조사 및 판매사 연대책임 등

5. 맺음말 – 한국의 금융플랫폼 정책대응 고려사항

02 일정규모 이상의 소수 빅테크 플랫폼사업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정절차 거쳐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격한 사전규제 마련

- 우리나라의 빅테크플랫폼은 미국의 GAFA와 같이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지 않으며, 중국의 Tencent 및 Ant group 처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할 위치에 있지는 않음
- 그러나 최근 저축은행 대출에서 급속도로 플랫폼화가 진전되는 것을 볼 때, 독점에 따른 문제를 확인한 후에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늦을 수 있음
- 빅테크플랫폼이 금융과 비금융을 융합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규제 일관성을 위하여 경쟁당국이 금융당국 및 개인정보보호 당국과 협력하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참고) 1) 유선통신산업의 예에 비추어 별도의 빅테크플랫폼 전문규제기관 필요

* 임준 2022.2, “디지털 플랫폼의 진화와 규제방향”, 보험연구원 KIRI 리포트 포커스

2) 금융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기관이 금융플랫폼 독과점 규제 필요

* 손상호 2022.2, “금융혁신 8대 과제 : 규제 · 감독, 빅테크, 가상자산, CBDC, 가계부채, 녹색금융 등”, 한국금융연구원

5. 맺음말 – 한국의 금융플랫폼 정책대응 고려사항

03

빅테크플랫폼에 대한 경쟁당국의 규제방안 마련되지 않을 시 금융당국이 우선 금융회사의 빅테크 의존도 제한하는 간접 규제방안 마련 필요

- 플랫폼 판매비중 제한 등 간접규제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빅테크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지고 경쟁당국의 적절한 규제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금융플랫폼의 금융부문 분리를 통하여 직접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 (중국이 채택한 접근순서임)
- 다만, 현실적으로 빅테크플랫폼의 금융부문 분리가 법률 제정 등의 절차로 어렵다면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 고려
 - 온라인에 의한 금융중개 및 판매업을 인가 또는 등록하도록 하여 금융플랫폼사업을 제도화하고, 금융플랫폼사업이 일정 규모에 달한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5. 맺음말 – 한국의 금융플랫폼 정책대응 고려사항

04 빅테크플랫폼의 요체는 데이터와 네트워크 효과의 상호작용인 점을 감안, 빅테크 규제 관점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 법규 정비

- 유럽에서도 PSD2에 따라 은행의 개인정보는 빅테크 등에 제한없이 이동되는 반면, 빅테크플랫폼 업체에 대하여 정보를 은행 등에 공유토록 의무화하는 것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향후 금융회사와 빅테크플랫폼이 상호간에 개방되고 동등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고객정보의 보호와 이동, 공유에 대한 합당한 기준을 마련하고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

World's Leading Think Tank



KDI KDI KDI KDI
KDI KDI KDI KDI
KDI KDI KDI KDI

